

수원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0나101635 판결 [계약금 반환청구 및 위약금, 손해배상 청구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화

변 론 종 결 2021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. 20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25. 선고 2020가단211039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
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9. 9. 6.경 피고와 전 배우자 B이 공동소유한 광주시 D 지층 전체 및 1층 약 180㎡를 임대차보증금 3,000만 원,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, 피고와 B은 잔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당초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를 절도 및 무단침입죄로 고소까지 하였는바,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, 위약금 300만 원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,900만 원(= 집기 및 물건 이전비 400만 원 + 개업준비를 위해 채용한 직원 2명의 2개월분 급여 1,000만 원 + 중고장비 계약금 손실 500만 원) 합계 2,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내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하현국, 판사 김선영, 판사 김유성